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3. 24 선고 2017가단2305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, 담당변호사 이상철

변론 종결 2020. 2. 4.

판결 선고 2020. 3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하남시 D 임야 84,997㎡ 중 별지 감정도 1의 90, 91, 92, 39, 40, 93, 94, 95, 96, 9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 부분 6,049㎡를 인도하고,

나. 위 선내 " 부분 6,049㎡ 내 별지 감정도 2의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' 부분 65㎡, 8, 9, 10, 11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2' 부분 17㎡, 12, 13, 14, 15,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3'부분 24㎡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4'부분 9㎡, 23, 24, 25, 26, 27, 28,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5' 부분 39㎡, 29, 30, 31, 32,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6' 부분 38㎡, 33, 34, 35, 36,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7' 부분 50㎡, 37, 38, 39, 40,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8' 부분 33㎡, 41, 42, 43, 44, 45, 46,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9' 부분 34㎡,

42, 47, 48, 49, 50, 51,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0' 부분 81㎡, 52, 53, 54, 55,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1' 부분 35㎡, 56, 57, 58, 59,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2' 부분 106㎡, 60, 61, 62, 63,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3' 부분 52㎡, 64, 65, 66, 67,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4' 부분 61㎡, 68, 69, 70, 71,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5' 부분 136㎡, 72, 73, 74, 75, 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6' 부분 37㎡ 지상 각 비닐하우스와 건축물을 철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7. 12. 하남시 D 임야 87,997㎡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1의 90, 91, 92, 39, 40, 93, 94, 95, 96, 9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6,049㎡를 점유(이하 '이 사건 점유 부분'이라한다)하면서, 위 선내 'ㄱ' 부분 6,049㎡ 내 별지 감정도 2의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' 부분 65㎡, 8, 9, 10, 11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2' 부분 17㎡, 12, 13, 14, 15,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3' 부분 24㎡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4' 부분 9㎡, 23, 24, 25, 26, 27, 28,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5' 부분 39㎡,

29,30, 31, 32,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6' 부분 38㎡, 33, 34, 35, 36,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7' 부분 50㎡, 37, 38, 39, 40,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8' 부분 33㎡, 41, 42, 43, 44, 45, 46,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9' 부분 34㎡, 42, 47, 48, 49, 50, 51,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0' 부분 81㎡, 52, 53, 54, 55,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1' 부분 35㎡, 56, 57, 58, 59,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2' 부분 106㎡, 60, 61, 62, 63, 6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3' 부분 52㎡, 64, 65, 66, 67,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4' 부분 61㎡, 68, 69, 70, 71,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5'부분 136㎡, 72, 73, 74, 75, 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D-16' 부분 37㎡ 지상에 각 비닐하우스와 건축물(이하 '이 사건 각 시설물'이라 한다)을 신축한 후 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애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(피고는 2020. 1. 31.자 준비서면에서 위 선내 'D-16' 부분 6,049㎡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거나, 위 선내 'D-16' 부분 37㎡ 지상에 시설물을 소유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, 위 주장은 단순 부인의 성격으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,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, 아래 근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 및 소유 부분을 원고 주장 그대로 인정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의 의하면,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자신의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전 소유자인 E종중의 관리인인 F과의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, 민법

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나, 피고가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전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, 위 임대차계약이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,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F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정(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10. 25. 선고 2018가단2522 판결 참조)만을 엿볼 수 있으므로,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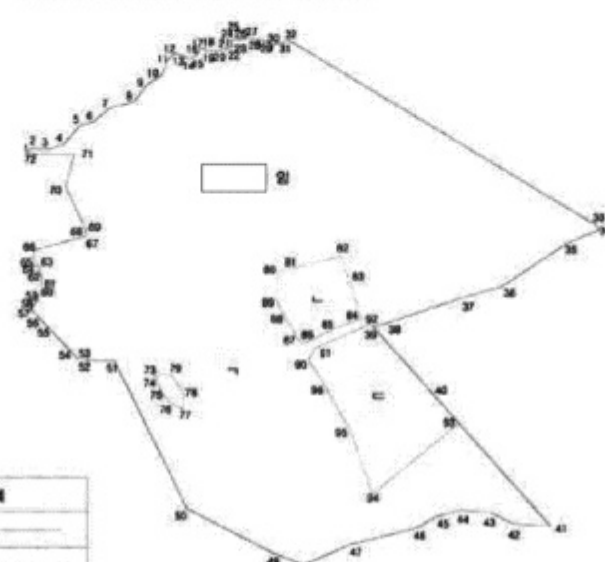
판사 오택원

(감 정 도)

토 지 소 재	경기도 하남시 3 필
---------	--

사건 2018가단2522 건물철거 및 토지면도





별 례	
임야선	
의뢰인 지점선	

토 지					
지 번	지목	부호	내 용	면적(㎡)	비 고
	임야		1~51, 73~79, 73.51~72.1 점들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	84997	
			1~39, 92~90, 96~93, 41~51, 73~79, 73.51~72.1 점들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	76494	
			80~89, 80 점들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	2454	
			90~92, 39, 40, 93~96, 90 점들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	6049	

비 고	※ 본 감정도는 축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